

(붙임2)

## 한국은행 경기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2024. 3. 29. 전부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“세칙”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“절차”)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대상)** ① 경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** 경기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명(사본, 국세청으로부터 대출취급일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5. 기타 경기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**제4조(평가관리 기준)**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5. 제도에 대한 이해도(10%)

**제5조(기타 사항)**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24. 3. 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기준의 폐지) 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을 적용한다.

**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<sup>1)2)</sup>**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2	벤처기업	전략	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
A3	혁신기업	전략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신기술(NET, New Excellent Technology) 및 신제품(NEP, New Excellent Product)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- 산학연collabo R&D 사업 및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- 기술평가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)이 발급한 「기술평가인증서」를 보유한 중소기업(단, 협약체결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 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취급점장이 <별지 제5호 서식>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 한함)
A4	녹색기업	전략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기업,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인증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인증, 녹색기술제품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취득한 기업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(설비인증)을 받은 기업 -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환경기업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6	추천기업 <sup>3)</sup>	전략	<p>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G마크 인증기업</li> <li>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(상법상 회사에 한함) 및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(상법상 회사에 한함)</li> <li>-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</li> <li>-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 보증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중소기업*</li> </ul> <p>*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 시 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(C2자금) 연계보증 업무협약」(이하 협약)을 준수한 대출에 한함. 현행 협약의 연계보증 지원규모 소진 시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서 제외(다만 연계보증 지원규모 소진 전 배정 신청한 대출의 최초 만기일까지의 지원연장은 제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기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기업</li> <li>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브랜드K 선정기업</li> </ul>
A7	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일반	<별표 1-1>의 경기본부 지역육성산업 영위기업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전략	<p>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</li> <li>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</li> <li>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</li> </ul>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전략	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농업, 임업 및 어업(KSIC 01~03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을 포함)
A14	명절·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<sup>4)</sup>	일반	명절·연말 등에 따른 자금수요, 자연재해·연쇄부도 등 지역 경제사정에 따른 긴급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15	기타 지원기업 <sup>4)</sup>	전략	<p>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고용우수기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실행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말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(최근 3개월에 속하지 않는 연도말 기준) 대비 100분의 5 및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 또는 최근 반기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전기 대비 100분의 5 및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</li> <li>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</li> <li>- 경기도가 인증한 일자리우수기업</li> <li>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우수기업</li> <li>-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용기업</li> <li>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</li> </ul>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조선업(KISC 311), 해운업(KISC 501, 502), 음식·숙박업(KISC 55~56, 단 5621 제외), 도소매업(KISC 45~47), 여행업(KISC 752), 운수업(KISC 49, 51~52), 여가업(KISC 90, 911) 영위기업

- 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- 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- 3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4) 경기본부장은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### 경기본부 지역육성산업

#### 1. 「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역육성산업<sup>1)</sup>

	산업명	내 용	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(KSIC, 10차)	
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	로봇산업	산업용 로봇제조	2928	
	나노산업	「나노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나노기술기반 제품생산 업체	-	
	신재생에너지 산업	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 라 인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생산업체	-	
	제약산업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	211, 212	
	고령친화산업	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제 품생산업체 및 고령친화우수사업자	-	
글로벌 산업	디스플레이산 업	표시장치 제조업	2621	
	반도체산업	반도체 제조업	261	
	차세대 자동차산업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	
지식 기반 서비 스업	항만물류산업	외항 및 내항 화물운송업	50112, 50122	
		항만 내 여객 운송업	50202	
		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 운영업	52921	
		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	52929	
	관광레저산업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국내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, 유원시설 업	-	
	전시컨벤션산 업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75992	
	영상·정보기술( IT) 산업	영상·정보기술( IT) 산업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58~63
			연구개발업	70
			광고업	713
		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			경영컨설팅업	71531
		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	72
			전문디자인업	732
			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		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			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73909
			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
			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
			포장 및 충전업	75994
			온라인 교육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에 한함)	85503
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			8566	
창작, 예술관련 서비스업			901	
전통 산업	섬유산업	섬유제품 제조업	13	
	가구산업	가구 제조업	32	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## 2. 본부장이 정하는 지역육성 연관 산업<sup>1)</sup>

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, 10차)
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 (단 251, 2520, 2592, 2593, 2594, 2599 제외)
전자부품 등 제조업	26
전기장비 제조업	28 (단 284, 285, 289 제외)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 (단 291, 2925, 2929 제외)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<별표2>

**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2)</sup>**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
제조업	33402 중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중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7 중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	주차장운영업
주점업	5621	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 중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	63999 중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 중	홍신소
	75993	신용 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	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교육 서비스업	855	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	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12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	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	이용업 및 미용업
	96122	마사지업
	96129	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	96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

- 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
 2) 등록된 업종코드 또는 주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도박, 성인용품 등 불건전,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